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시스템 내 예금 토큰 기반 지급·이체 서비스 등 혁신금융서비스 9건 지정

금융위원회는 10월 30일 정례회의를 통해 9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하였다. 이로써 현재까지 누적 총 384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시장에서 테스트해 볼 수 있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와 관련하여 지정내용 변경(1건) 및 지정기간 연장(1건)을 결정하고, 규제개선 요청(1건)을 수용하였다. (의결 결과 세부내용 [\[참고\]](#))

금번 신규 지정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시스템 내 예금 토큰 기반 지급·이체 서비스', '마이데이터 활용 주식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카드 서비스'는 국민들의 관심과 활용도가 높은 지급결제 및 주식거래 등과 관련되어 있어 국민편익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금융위 의결 결과 >

구 분	업체명	서비스명
신규지정 (9건)	KB국민은행 외 6개사 ¹⁾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시스템 내 예금 토큰 기반 지급·이체 서비스
	한화투자증권	마이데이터 활용 주식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NH농협은행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카드 서비스
지정내용 변경(1건)	네이버파이낸셜 외 10개사 ²⁾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지정내용 변경
지정기간 연장(1건)	네이버파이낸셜, 하나은행	페이머니 통장 서비스 지정기간 연장
규제개선 요청(1건)	페이하이어	소상공인의 비대면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서비스

1) (주)KB국민은행, (주)신한은행, (주)우리은행, (주)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 (주)NH농협은행, (주)부산은행

2) 네이버파이낸셜(주), (주)뱅크샐러드, (주)비바리퍼블리카, 에스케이플래닛(주), 엔에이치엔페이코(주), (주)카카오페이, (주)쿠콘, (주)핀다, (주)핑크, (주)해빗팩토리, (주)렉토데이터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총괄과	책임자	과 장	신상훈 (02-2100-2530)
		담당자	서기관	김보균 (02-2100-2841)
			사무관	이석애 (02-2100-2859)
<공동>	금융위원회 은행과	책임자	과 장	이진수 (02-2100-2950)
		담당자	사무관	박준상 (02-2100-2952)
<공동>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과	책임자	과 장	주홍민 (02-2100-2910)
		담당자	사무관	조의열 (02-2100-2913)
<공동>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	책임자	과 장	이진호 (02-2100-2970)
		담당자	사무관	변경홍 (02-2100-2975)
<공동>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책임자	과 장	신상록 (02-2100-2620)
		담당자	사무관	권진웅 (02-2100-2625)
<공동>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책임자	과 장	고상범 (02-2100-2650)
		담당자	사무관	정종현 (02-2100-2654)
<공동>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책임자	과 장	신장수 (02-2100-2990)
		담당자	사무관	이민형 (02-2100-2996)
<공동>	금융위원회 보험과	책임자	과 장	고영호 (02-2100-2960)
		담당자	사무관	윤세열 (02-2100-2961)
<공동>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수호 (02-2100-2630)
		담당자	사무관	홍연제 (02-2100-2631)
<공동>	금융감독원 디지털혁신국	책임자	국 장	곽범준 (02-3145-7160)
		담당자	팀 장	심은섭 (02-3145-7162)
<공동>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책임자	국 장	정우현 (02-3145-8020)
		담당자	팀 장	김지웅 (02-3145-8022)
<공동>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	책임자	국 장	代이동규 (02-3145-7570)
		담당자	팀 장	박재영 (02-3145-7590)
<공동>	금융감독원 금융IT안전국	책임자	국 장	백규정 (02-3145-7120)
		담당자	팀 장	이성욱 (02-3145-7125)
<공동>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	책임자	국 장	이길성 (02-3145-5700)
		담당자	팀 장	이승훈 (02-3145-5685)
<공동>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책임자	국 장	서영일 (02-3145-7460)
		담당자	팀 장	황기현 (02-3145-7474)
<공동>	금융감독원 여신금융감독국	책임자	국 장	김은순 (02-3145-7550)
		담당자	팀 장	강병재 (02-3145-7447)
<공동>	한국은행 디지털화폐기획팀	책임자	팀 장	김동섭 (02-750-6603)
		담당자	차 장	류재민 (02-750-6602)



〈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9건) 〉

①~⑦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시스템 내 예금 토큰 기반 지급이체 서비스

(주)KB국민은행, (주)신한은행, (주)우리은행, (주)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
(주)NH농협은행, (주)부산은행)

[서비스 주요내용]

지정 은행(7개사)은 한국은행이 '23.10월 발표한 「CBDC* 활용성 테스트 계획(금융위·금감원 공동 발표)」에 따라 구축 예정인 CBDC 시스템 내에서,

- 이용자에게 실명으로 전자지갑을 개설해 주고 은행 예금 기반의 토큰화**된 지급수단(이하 '예금 토큰')을 발행하여, 이용자가 예금 토큰을 이용해 사용처에서 물품·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지급·결제 기능을 제공합니다.

*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새로운 화폐

** 기존 자산을 분산원장기술 기반 플랫폼에서 유통될 수 있는 디지털 토큰(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이전될 수 있는 증표)으로 변환하는 과정

- ※ ① 이용자 - 본 테스트 참여를 신청한 금융소비자 중 10만 명(잠정)을 선별, 전자지갑 개설 및 예금 토큰을 사용한 지급·결제 등이 가능하도록 이용 자격을 부여할 예정
- ② 사용처 - 이용자가 예금 토큰을 사용하여 물품·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사업장 등

※ 「CBDC 활용성 테스트 계획('23.10.5., 한은·금융위·금감원)」 중 주요 관련 내용

- (목적)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기관용 CBDC(지급준비금과 유사하게 금융기관에 발행, 금융기관 간 자금거래, 최종 결제 등에 활용하는 CBDC)를 기반으로 디지털통화의 다양한 활용사례를 점검
- (내용) 기관용 CBDC를 기반으로 은행이 발행하는 예금 토큰의 경우 일반 국민들이 직접 이용하여 디지털통화의 효용을 체감할 수 있는 실거래 테스트를 실시
- (추진) 본 테스트에 한해 예금 토큰 발행·유통을 은행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로 허용 검토

[참고 - 예금 토큰 이용과정]

- ① (전자지갑* 개설) 이용자는 기존 은행 모바일 앱 등을 통해(온라인), 사용처의 사업주는 은행 창구 대면 방문을 통해(오프라인)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본인이 예금 토큰을 이용**하고자 하는 은행에서 전자지갑을 개설

* 예금 토큰과 같이 토큰화된 지급수단 등을 보관·관리·사용할 수 있는 전자적 공간

** ① 이용자-물품서비스 구매 시 지급결제 ② 사업주-물품서비스 구매대금 수령(추후 예금으로 전환)

② (예금 토큰 발행) 이용자는 이용을 희망하는 액수에 해당하는 예금 토큰의 발행을 은행에 신청, 은행은 해당 액수만큼의 현금 또는 이용자의 기존 예금을 예금 토큰으로 전환(토큰화)하여 이용자의 전자지갑에 발행

③ (지급·결제) 이용자가 사용처에서 물품·서비스를 구입할 경우 전자지갑을 사용하여 물품·서비스 구매대금을 지급*하면, 이용자의 전자지갑에서 사용처의 사업주 전자지갑으로 구매대금에 해당하는 액수의 예금 토큰이 이전

* 이용 중인 은행의 모바일 앱 내에서 생성되는 예금 토큰 결제 전용 QR코드를 활용

※ ① 이용자와 사용처의 전자지갑을 개설·관리하는 은행이 상이할 경우, 해당 은행 간 기관용 CBDC(한국은행 발행)의 이전이 동시에 발생하여 최종 결제 완료

② 본 테스트에 참여한 이용자·사용처 간 물품·서비스 거래 외의 예금 토큰 이전 (예:기존의 송금·이체와 유사한 이용자 간 임의적인 예금 토큰 이전)은 허용되지 않을 예정

○ (활용 : 디지털 바우처*) 은행이 분산원장기술에 담겨진 스마트계약기능을 통해 예금 토큰 이용자 앞 디지털 바우처 기능을 부여하면, 이용자가 바우처 지급 목적에 부합하는 물품 등을 구매하는 즉시 바우처 발급기관은 스마트 계약에 따라 보조 금액에 해당하는 액수의 예금 토큰을 이용자에게 환급

* 정부지자체 등이 정책적 목적에 따라 소비자의 특정 물품·서비스 구매 금액 일부를 보조

※ (참고) 예금 토큰은 한국은행이 구축·운영하는 CBDC 시스템 내에서만 발행·유통되며, 디지털 바우처 기능 또한 동 시스템 내에서만 활용 가능

[특례내용] 은행법 제27조, 제27조의2 및 제28조, 예금자보호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1항 및 제18조제2항,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정보처리위탁규정 제4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8조제5호

①예금인지 여부 등이 불명확한 예금 토큰 발행을 은행이 업무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②예금 토큰 이용자에 대한 예금자 보호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며, ③전자금융거래시 거래지시 내용 확인(스마트계약기능을 통한 바우처 기능 관련) 의무 적용을 제외하도록 하고, ④예금 토큰의 양도·발행시 은행 전산시스템 대신 CBDC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⑤은행이 예금 토큰의 원장(장부)을 CBDC 시스템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⑥CBDC 시스템 특성에 따라 은행의 내부통신망을 다른 기관의 내부통신망과 분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련 규제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기대 효과]

지정 서비스를 통해 거래 과정의 자동화, 결제 프로세스 효율화 등 분산원장 기술 기반의 지급결제가 금융 서비스 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해 보고, 여타 분산원장기술 기반 서비스 및 관련 기술과 인프라의 개선을 촉진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다양한 비용 절감을 통해 기존 결제수단에 비해 결제 수수료가 인하되는지, 디지털 바우처 기능 활용 시 정부·지자체 보조금의 집행 효율이 제고되는지 등

[주요 부가조건]

※ 현재 예금 토큰의 법적 성격(예: 예금인지 여부 등)이 아직 명확하지 않으며, 분산원장기술 기반의 지급거래 효력 발생의 시기·기준 등에 관한 법적 규율 등 또한 명확하지 않은 상황인 점을 고려,

- 이용자의 권리 보호, 거래상대방 보호 및 지급결제 안정성 등을 위해 권리의무 발생·변동 등과 관련한 명확한 기준 마련 등 조건을 부가

지정 은행은 ①예금 토큰 발행량에 대해서도 은행법령상 예금 관련 건전성 규제(예대율, LCR)를 준수해야 하고, ②예금자 보호 적용을 위한 조건을 명확히 하며 이용자의 예금 토큰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비상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③테스트 기간 종료 후의 기록 보존·파기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한편, ④이용자의 거래지시 철회에 관한 권리 보호를 위해, 물품·서비스의 환불 등에 요구되는 사용처-이용자 간 반대거래 프로세스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사용처가 이용자의 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 등을 약관 등에 명시해야 하고, ⑤전자지갑 개설 시점에 이용자로부터 거래정보 제공 관련 별도 동의를 징구해야 하며, ⑥관련 법령의 원칙 및 규정에 반하지 않도록 개인(신용)정보·금융거래정보 보호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⑦서비스 개시前 시스템 등 서비스 운영능력을 점검받아야 하며*, 소비자 보호 및 개인정보·정보보안과 관련한 관계 법령·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부가조건 준수여부 및 서비스 준비상황 전반에 대한 점검을 위해 금융위·금감원·한은 간 실무 협의체((가칭) CBDC 활용성 테스트 사전 점검 TF) 운영 예정

⑧ 마이데이터 활용 주식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주)한화투자증권)

[서비스 주요내용]

타 증권사에서 주식 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투자자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업*((주)한화투자증권)의 금리 조건이 더 유리한 경우 주식 담보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서비스 제공합니다.

* 지정 기업은 투자자에 대해 신용평가를 진행하고, 마이데이터를 통해 투자자의 타사 담보주식 현황을 확인한 후 대출 가능 여부 및 대출 가능 금액 등을 심사

[특례내용]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9조제1항

증권사는 자사에 계좌를 개설하여 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만을 대상으로 증권 담보부 용자 취급이 가능하나, 본 주식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신청인의 일시적 신용용자 취급*이 필요하므로 기존 담보대출의 대환을 위해 일시적으로 신용용자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타 증권사의 기존 증권 담보대출 상환 및 담보 설정 해지 목적

[기대 효과]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하여 투자자가 모바일을 통해 기존 대출에 비해 유리한 금리조건의 대출로 편리하게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소비자 편익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소비자는 기존 주식 담보대출 상환을 위해 담보주식을 매도하거나 제3의 대출처에서 자금을 일시 대출할 필요 없이 대출 전환 가능

[주요 부가조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정 기업이 주식 담보대출의 대환 전 소비자에게 증권사별 상이한 금리뿐만 아니라 담보비율에 따른 대출 가능금액, 거래수수료 등 기타비용에 대해 안내하도록 하고, 주식담보대출의 대환 후 제3자에게 해당 대출채권을 매각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정 기업은 서비스 개시 전, 투자자가 대출금 미상환 또는 담보주식 미입고 시 구체적인 회수방안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⑨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카드 서비스

((주)NH농협은행)

[서비스 주요내용]

미성년자인 자녀(만 12세 이상, 중·고등학생)가 부모의 신용카드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가족카드)를 발급·사용토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특례내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7

원칙적으로 신용카드는 민법상 성년 연령 이상인 자에 한하여 발급가능하나, 부모의 신용카드 이용한도 내에서 미성년자인 자녀가 신용카드(가족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기대 효과]

가족카드 발급대상을 만 12세 이상까지 확대하여 미성년자의 금융거래 편의성을 제고하고, 신용카드 양도·대여 관행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요 부가조건]

이용업종 및 이용한도를 제한하고, 자녀의 카드사용 내역 알림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업종제한) 교통, 편의점, 문구점, 학원, 서점 및 청소년 일상생활에 밀접한 업종 등 (이용한도) 원칙적으로 월 10만원 이내, 부모의 신청이 있을 시 최대 월 50만원

<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내용 변경 (1건) >

□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지정내용 변경

(네이버파이낸셜(주), (주)뱅크샐러드, (주)비바리퍼블리카, 에스케이플래닛(주), 엔에이치엔페이코(주), (주)카카오페이, (주)쿠콘, (주)핀다, (주)핀크, (주)해빗팩토리, (주)핵토데이터)

[기존 지정내용] ('23.7월 지정)

온라인 플랫폼에서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소비자에게 적합한 여러 보험 회사의 보험 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서비스입니다.

동 서비스에 대해서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및 보험대리점 등록에 관한 규제,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신고에 대한 규제 특례를 부여해 왔습니다.

[지정내용 변경]

일부 보험료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보험료 계산·비교의 정확성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보험개발원 - 신청인 간 정보공유를 위해 규제특례 조항**을 추가(기존 11개사중 7개사만 해당)하였으며, 소비자의 다양한 보험상품 비교를 보장하기 위한 부가조건을 추가(기존 11개사 공통)합니다.

* 소비자의 차량정보, 기존 보험계약 만기일 등

** 보험개발원은 보유 개인정보를 순보험료 산출 목적 외에는 제3자 제공 불가(보험업법 제176조제12항)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 (1건) >

□ 페이머니 통장 서비스

(주)네이버파이낸셜, (주)하나은행)

[기존 지정내용] ('22.9월 지정, '22.11.3. 서비스 개시)

네이버페이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하나은행 제휴 계좌(이용자 명의)에 보관*하고, 네이버페이를 통해 결제를 할 때마다 제휴 계좌에서 자동으로 선불충전이 이루어지는 연계 서비스입니다.

* 하나은행은 소비자에게 예금에 대한 이자 지급

계좌소개·안내 등은 은행 본질적 업무를 포함하여 위탁이 불가능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 등록이 필요하나, 네이버파이낸셜이 이용자에게 하나은행 제휴계좌를 소개·안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지정기간 연장] ('24.11.3.~'26.11.3.)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및 추가적인 운영성과 검증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규제개선 요청 (1건) >

□ 소상공인의 비대면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서비스

(주)페이하이어)

[기존 지정내용] ('20.11월 지정, '22.11월 지정기간 연장)

신용카드가맹점 모집시 사업장 방문없이 필요 증빙자료를 모바일 앱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가입 절차를 진행하는 비대면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서비스입니다.

신용카드가맹점을 모집하는 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을 모집할 때 신용카드가맹점이 되려는 자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실제영업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나, 현장 방문 없이 비대면 방식*으로 가맹점 가입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한 바 있습니다.

* 가맹점신청인이 제출한 사진의 GPS 정보 및 증빙자료 등을 검토하여 영업여부를 검증하는 방법 등

[규제개선 요청]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10(가맹점모집인 등의 준수사항 등) 신용카드가맹점이 되려는 자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영업 여부 등 확인 해야 되는 것에 대한 규제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금융위는 비대면 가맹점 가입을 허용하여 소상공인의 사업개시 지연을 방지하는 등 편의성이 증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 하였습니다.

* 특례 없이도 동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령에 대한 법령정비를 착수할 예정이며, 법령 정비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최대 1년6개월) 동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은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서비스를 지속 제공 가능